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용자·근로자대표 추천단체 정비 〉

■ 이수진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552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사용자·근로자 대표 추천단체 정비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7
다. 관계 기관 의견	13

I. 개요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55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8인
- (2) 제 안 일 : 2025. 1. 15.
- (3) 회 부 일 : 2025. 1.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 방식이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

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용자·근로자 대표 추천단체 정비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각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각각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고(안 제5조, 제103조 및 제104조),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원 중 ‘이사’를 ‘비상임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당연직 1명(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을 제외한 8명의 비상임이사 구성을 현행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에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역가입자 대표’ 및 ‘수급자 대표’ 각 2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① (생략)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	② ----- ----- -----

현행	개정안
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u>사용자 단체</u>가 추천하는 자 4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u>근로자 단체</u>가 추천하는 자 4명 3. ~ 5. (생략) ③ (생략) 제30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u>이사 9명</u>, 감사 1명을 두되, <u>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u>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	----- ----- ----- -----. 1. -----<u>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u>----- 2. -----<u>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u>----- 3.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임원) ① ----- -----<u>비상임이사 9명</u>-----<u>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u> 1. <u>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u> 2. <u>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u> 3. <u>지역가입자 대표 2명</u> 4. <u>수급자 대표 2명</u> 5. <u>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u> ② ----- -----

현행	개정안
이사·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u>이사</u>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는 지급할 수 있다.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생략)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u>사용자 단체</u>가 추천하는 자 3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u>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u>가 추천하는 자 3명 3. · 4. (생략) ③ ~ ⑦ (생략)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① (생략)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생략)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u>사용자 단체</u>가 추천하는 자 3명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u>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u>가 추천하는 자 3명	---비상임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 ③ <u>비상임이사</u>----- ----. ----- ----.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u>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u>----- 2. -----<u>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u>----- 3. · 4.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u>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u>----- 3. -----<u>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u>-----

현행	개정안
천하는 자 3명 4. · 5. (생략) ③ ~ ⑦ (생략)	<u>체</u>----- 4. · 5.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단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공단 임원에 대하여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10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10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등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대표”라 한다)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을 각각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민연금사업의 운영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등 국민연금심의위원회등의 심의사항¹⁾이 가입자·수급자 등 ‘전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추천단체를 ‘전국적 규모’로 명시하려는 개정안은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5년 2월 현재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각 1명씩 추천한 사용자대표(4인)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동조합이 각 1명씩 추

1) 「국민연금법」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①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
3.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4.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07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 자산의 구성과 기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 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
4.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천한 근로자대표(4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가 각 1명씩 추천한 사용자대표(3인)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 각 1명씩 추천한 근로자대표(2인, 1인은 공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가 각 1명씩 추천한 사용자대표(3인)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 각 1명씩 추천한 근로자대표(3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만,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서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나 그 연합단체로 정의하면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의 층위를 갖춘 체계로 구조화하여 그 설립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²⁾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0조(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개정안의 ‘노동단체’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을 의미하는지 혹은 ‘노동조합’ 외에 행정청에 신고되지 아니한 노동자의 일반 조합까지를 광의로 포함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24년 12월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23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한장노총), 전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노총), 국민통합노동조합총연맹(통합노총) 및 대한민국노동조합총연맹(대한노총) 등 총 6개가 있음.³⁾

- 참고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근로자대표 추천단체를 ‘「노동조합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명시(「공인노무사법」 제3조의4제4항제5호나목4)한 경우와 「노동조합법」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규정한 사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3항제1호5)가 있고, 개정안과 같이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라 하여 「노동조합법」을 인용하지 아니하면서 ‘노동조합’ 대신 ‘노동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례(「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

3) 고용노동부, 『2023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2024년 12월.

4)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4(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④ 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임원) ③ 비상임이사(제4항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3호⁶⁾) 등이 있음.

- 한편 「노동조합법」은 ‘사용자단체’를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게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로 정의하고 있는데,⁷⁾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의 경우와 달리 ‘사용자단체’의 규모가 전국 또는 일부 지역 단위인지에 따라 층위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여, 특정 사용자단체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용자단체의 정관 등을 검토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인바,

개정안과 같이 추천권을 가진 사용자단체를 ‘전국적 규모’로 한정하게 되면 추천단체가 ‘전국적 규모’인지에 대한 해석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등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 등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가운데 위촉하도록 하면서, 그 추천권을 가진 사용자단체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및 ‘한국무역협회’ 등 2개가 지정되어 있음.⁸⁾

6)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게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8)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③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고,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

□ 또한, 사용자대표 추천단체의 활동 범위를 법률에서 ‘전국’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등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과 함께 전국적 규모임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용자단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경우라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맹하지 아니한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⁹⁾의 참여가 배제되는 점에 대하여도 함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아울러 개정안은 공단 임원 중 ‘이사’를 ‘비상임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당연직 비상임이사 1명(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을 제외한 비상임이사 8명의 구성 원칙을 현행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에서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수급자 대표 각 2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과 일관되도록 하면서,¹⁰⁾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수급자 등 국민연금 관련 4대 이해관계집단의 대표가 비상임이사에 각각 동수로 포함되도록

람 중에서 제청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19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 지정」

1. 한국경영자총협회
2. 한국무역협회

9)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총연합단체 미가맹 조합원은 2023년 기준 총 479,758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2,737,379명) 대비 약 17.5%에 해당함.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임원) ①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②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 경우 안 제30조 외에도 현행법 제31조제2항, 제32조 단서 및 제38조제2항에서도 ‘이사’를 ‘비상임이사’로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¹¹⁾

- 참고로, 현재도 공단 「정관」에서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수급자 대표 각 2인씩이 공단 비상임이사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중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는 각각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노동조합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

[공단 임원 현황(2025년 2월 현재)]

구 분	성 명	비 고
이사장	김태현	
상임이사	장재혁	기획이사
	정태규	연금이사
	이여규	복지이사
	서원주	기금이사

11) 「국민연금법」

제31조(기금이사) ② 기금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금 이사의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38조(이사회) ② 이사회는 이사장·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12) 국민연금공단 「정관」

제10조(임원) ②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용자대표로서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2명
2. 근로자대표로서 노동조합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2명
3. 지역가입자대표로서 농어업인단체, 자영업단체, 소비자단체 또는 시민단체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 2명
4. 수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 2명
5. 당연직이사 :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구 분		성 명	비 고
비상임 이사	사용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근로자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공석)	
	지역가입자	김향란	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 회장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교육부문장
	수급자	서원석	세종대학교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
		이지유	한국감사협회 감사품질평가위원회 위원
	당연직	진영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자료: 국민연금공단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연령·성별·직역별로 구성된 다양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오히려 현행 규정보다 다양한 단체의 참여를 제한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전국적 규모’의 법령상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현장 적용 시 혼란이 예상되는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개정안 적용 시 현재 참여 중인 국민노동조합(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산하/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경우 위원임기 종료 후 재위촉이 곤란하게 됨.

문 의 처

02)6788-5510

참고

국민연금심의위원회등 구성 현황 (2025년 2월 기준)

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구분		위원명 (직위)	추천기관	비 고
위원장		이 기 일 (복지부 1차관)	당연직	
공익대표		진 영 주 (복지부 연금정책관)	장관 지명	
		정 태 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윤 선 중 (동국대학교 교수)		
		이 강 구 (KDI 연구위원)		
		김 수 완 (강남대학교 교수)		
단체 추천	사용자 대표	임 영 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 명 로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박 양 균 (정책본부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강 석 구 (조사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근로자 대표	홍 석 환 (정책국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 자 연 (정책자문위원)	전국노동조합총연맹	
		류 제 강 (정책2본부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변 윤 석 (법률지원단당)	국민노동조합	
	지역가입자 대표	농어업 단체	공석	(위촉 진행 중)
			공석	(위촉 진행 중)
		자영자 단체	하 동 순 (세 무사)	한국세무사회
			전 선 이 (변 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소비자단체	전 계 순 (원장)	한국소비자원
		시민단체	김 영 순 (감사, 서울과대 교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수급자 대표		박 용 수 (회사원)	장관 지명	
		문 치 호 (국민연금나눔재단 이사)		
		이 은 미 (동화작가)		
		홍 태 표 (장애인식개선 강사)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분		위원명 (직위)	추천기관	비 고
위원장		조 규 홍 (복지부장관)	당연직	
당연직		김 범 석 (기재부 제1차관)		
		박 범 수 (농림축산부차관)		
		박 성 택 (산업통상부 제1차관)		
		김 민 석 (고용노동부차관)		
		김 태 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단체 추천	사용자 대표	류 기 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선무)	한국경영자총협회	
		이 명 로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강 석 구 (조사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근로자 대표	정 정 희 (위원장)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강 석 윤 (상임부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석		(위촉 진행 중)
	지역 가입자 대표	박 정 균 (상호금융자산운용본부장)	농협중앙회	
		신 황 용 (기획부대표)	수협중앙회	
		서 원 정 (상근부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이 한 나 (변호사)	소상공인연합회	
		김 태 민 (변호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 기 영 (명지대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 전문가		조 동 철 (원장)	한국개발연구원	
		공석		(위촉 진행 중)

다.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구분		위원명 (직위)	추천기관	비 고
위원장		이 기 일 (복지부 1차관)	당연직	
당연직		주 환 옥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공 석 (농림부 농촌정책국장)		
		강 감 찬 (산자부 산업정책관)		
		이 민 재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진 영 주 (복지부 연금정책관)		
단체 추천	사용자 대표	박 영 석 (서강대 교수)	한국경영자총협회	
		오 민 영 (변 호 사)	대한상공회의소	
		강 경 훈 (동국대 교수)	중소기업중앙회	
	근로자 대표	황 영 민 (변 호 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나 원 준 (경북대 교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 세 은 (충남대 교수)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지역 가입자 대표	신 재 근 (농협경제연구소 국장)	농협중앙회	
		박 수 연 (수협중앙회 변호사)	수협중앙회	
		강 창 수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이 병 희 (한양대 교수)	소상공인연합회	
		신 민 수 (한양대 교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신 현 한 (연세대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 전문가		이 다 미 (연금연구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 정 립 (원장)	국민연금연구원	